

수원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717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717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248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심대희, 장효정

변론 종결2022. 9. 16.

판결 선고2022. 11. 11.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2489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1,326,226원을 15,225,456,2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546,575원을 1,071,416,591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1,326,226원을 15,217,033,8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546,575원을 1,079,838,96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2행의 "(이하 '이 사건 3번 대출약정'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3번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번 대출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9행부터 20행까지의 "④"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약정이자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대출금에 대하여 복리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약정이자에 대하여 2019. 10. 22.까지 계산한 연체이자 부분(최소한 합계 3,467,982원)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17행부터 19행까지의 "③"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기발생한 약정이자에 대한 각 발생일 다음 날부터 배당기일인 2020.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된다. 특히 2019. 10. 23.부터 2020.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경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인 연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0조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 취지는 경매신청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신청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제출한 경매신청서(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채권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채권]

14,474,111,683원과 그중 14,182,429,935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체적 내역]

14,474,111,683원

가. 산업운영자금대출2) : 2,801,291,928원

(원금 2,700,000,000원, 약정이자 34,800,408원, 연체이자 66,491,520원)

나. 산업시설자금대출3) : 11,672,819,755원

(원금 11,330,000,000원, 약정이자 117,629,527원, 연체이자 225,190,228원)

나)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채권자인 산업은행은 ①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원금 14,030,000,000원(= 2,700,000,000원 + 11,330,000,000원)과 2019. 10. 22.까지의 약정이자 152,429,935원(= 34,800,408원 + 117,629,527원) 및 연체이자 291,681,748원(= 66,491,520원 + 225,190,228원)의 합계 444,111,683원과의 총합계 14,474,111,683원(= 14,030,000,000원 + 444,111,683원)과 ②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원금 14,030,000,000원과 2019. 10. 22.까지의 약정이자 152,429,935원의 합계액 14,182,429,935원에 대한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신청채권자인 산업은행(양수인: 피고)의 청구채권은 위 범위 내로 한정되고, 이를 전제로 배당이 행하여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서 청구채권으로 기재된 2019. 10. 22.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확정액 중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기발생 약정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 제2조 제3항에는 "이 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 지체가 있을 경우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대출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면 그 약정이자에 대하여도 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약정이자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대출금에 대하여 복리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복리와는 개념이 다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발생 약정이자에 대한 2019. 10. 22.까지의 연체이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약정이자를 매 1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19년 3월 내지 4월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기발생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산업은행이 2019. 10. 22.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상세내역표(을 제6호증)에 의하면, '약정이자'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이자 및 원금의 납입기일(상환일)까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정한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고, '연체이자'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약정이자 및 원금의 납입기일(상환일) 다음날부터 임의경매신청일인 2019. 10. 22.까지

'약정이율 + 연체가산이자율 3%'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서 '연체이자'는 동일한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자와 중복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납입기일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및 원금에 대하여 각 납입기일(상환일)을 도과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날부터 임의경매신청일까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산업은행은 자발적으로 각 약정이자 발생 다음날에 관하여는 지연배상금률이 아닌 약정이율(이 사건 1번 대출약정은 연 2.45%, 이 사건 2번 대출약정은 연 4.34%, 이 사건 3번 대출약정은 연 4.85%)을 적용하여 그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체가자가산율 3%를 적용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연체이자를 계산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기발생 약정이자에 대한 약정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산정한 별지 표 기재 연체이자 상세내역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청구채권 중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금이 14,03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

22.까지의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합계액은 444,111,683원(= 152,429,935원 +

291,681,748원)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청구채권 중 다투는 부분, 즉 ① 미변제 대출원금에 대한 2019.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 3%'를 적용하여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15%'를 적용하여 산정할 것인지 여부와 ② 위 약정이자 152,429,935원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미변제 대출원금의 2019.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갑 제14, 16, 19, 22, 32, 38, 40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는 산업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그 여신거래기본약관(갑 제22호증) 제3조(이자등과 지연손해금) 제5항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56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은행은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은행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사항은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적용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정부가 2017.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금융위원회는 2018. 1. 18. 업권별 협회장, G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간담회5) 를 개최하여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위 간담회에서는 '연체가산금리 인하'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 해외 사례,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

① (부과수준)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3%p" 수준으로 인하

② (대상업권) 전 금융업권(은행 + 비은행)

③ (적용대상)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

④ (추진방식) 업권별 규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 (비은행) 대부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

○ (은행권) 비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우선 시행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화

※ 현재 은행권은 금통위 규정(한은),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 규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한은과 협의 완료)

⑤ (적용시점) 자율시행 및 고시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③ 위와 같은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8. 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20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통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6)에 적용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을 3%로 제한하였고, 이 사건 고시는 2018. 4. 30.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고시의 상위법령인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개정이력은 아래와 같다.

제9조④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제9조④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제9조④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④ 산업은행은 위 금융권 간담회 이후 개별거래대출용 대출거래약정서상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 조항(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조항이다)을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일괄적으로 연 3%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 ⑤ 산업은행이 2019. 10. 22.자 기준으로 작성한 소외 회사 채권 상세내역(을 제6호증)에는 별지 표 연체이율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번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10. 22.까지 연 5.45%의 지연배상금률을(별지 표 순번으로는 2번), 이 사건 2번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10. 22.까지 연 7.34%의 지연배상금률을(별지 표 순번으로는 3, 4, 5번), 이 사건 3번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2019. 10. 22.까지 연 7.85%의 지연배상금률을(별지 표 순번으로는 1번)각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산업은행은 2019. 11. 6.경 피고에게 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시 개정 및 시행 전 금융업계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연체가산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특히 은행권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개정 전까지는 이 사건 고시 개정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연체가산이자율 인하에 따라 그 인하 전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경우에도 인하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인하된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은행은 위와 같은 연체가산이자율 인하 방안에 따라 개별거래대출의 대출거래약정상 연체가산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연 3%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공시하거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연 5.45%(이 사건 1번 대출약정), 연 7.34%(이 사건 2번 대출약정), 연 7.85%(이 사건 3번 대출약정)의 각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각 약정이율인 연 2.45%, 연 4.34%, 연 4.85%에 연 3%의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율인 점, ③ 피고는 산업은행이 위와 같이 연 3%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산업은행은 자발적으로 늦어도 2019. 4. 5.경부터는 앞서 본 대부업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고시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을 약정이율에 연3%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연배상금률이 연 5.45%(이 사건 1번 대출약정), 연 7.34%(이 사건 2번 대출약정), 연 7.85%(이 사건 3번 대출약정)로 변경된 상태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발송한 각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양도대상채권의 내역 표에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이 연 15%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도된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은 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송달한 채권양도 통지서에 산업은행이 가지는 채권의 범위를 초과한 지연배상금률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은 연 1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 제2조 제3항 제2호는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같은 항 제1호와 유기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1번, 2번 각 대출약정서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1번, 2번 각 대출약정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여 산출하는데, 이 경우 약정이자율과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값이 연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약정이자율과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값이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이 되고, 연 15%를 초과한다면 이를 연 15%로 제한하여 이를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3번 대출약정서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3번 대출약정은 아예 연체기간별 차등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체가산이자율,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에 대한 기재 자체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제1호에 기재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도 위 제1호의 해석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약정이자율과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값이 되고, 이 값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약정이자율과 앞서 본 연체가산이자율 연 3%의 합계는 모두 연 1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연 5.45%(이 사건 1번 대출약정), 연 7.34%(이 사건 2번 대출약정), 연 7.85%(이 사건 3번 대출약정)] 그 합계 이자율을 그대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체적 계산내역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미변제 대출원금, 약정이율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미변제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의 한계가 '약정이율 + 연 3%'인 점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산업은행(양수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9. 10. 23. 이후의 지연손해금액수는 아래와 같이 742,923,150원이다.

1 대출약정(산업시설 자금)	6,580,000,000원	2019.10.23.	2020.8.13.	2.45 %	3 %	5.45 %	296/366	289,835,479원7) 계산상 290,023,387원이나,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89,835,479원으로 인정한다.
2 대출 약정(산업시설자금)	4,750,000,000원8) 4,750,000,000원(= 2,400,000,000원 + 2,240,000,000원 + 110,000,000원)	2019.10.23.	2020.8.13.	4.34 %	3 %	7.34 %	296/366	281,785,616원9) 계산상 281,968,306원이나,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81,785,616원으로 인정한다.
3 대출 약정(산업운전자금)	2,700,000,000원	2019.10.23.	2020.8.13.	4.85 %	3 %	7.85 %	296/366	171,302,055원10) 계산상 171,413,114원이나,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71,302,055원으로 인정한다.
합계	14,030,000,000원		742,923,150원					

다. 약정이자의 2019. 10. 23.부터 2020. 8. 13.(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1번 대출약정의 기발생 약정이자의 합계가 50,418,985원(= 13,691,808원 + 14,133,479원 + 11,502,246원 + 11,091,452원), 이 사건 2번 대출약정의 기발생 약정이자 합계가 67,210,542원(= 8,561,095원 + 8,561,095원 + 8,846,465원 + 7,990,356원 + 7,990,356원 + 7,990,356원 + 8,256,701원 + 7,457,665원 + 392,383원 + 392,383원 + 405,463원 + 366,224원), 이 사건 3번 대출약정의 기발생 약정이자 합계가 34,800,408원(= 11,121,780원 + 11,121,780원 + 10,763,013원 + 1,793,83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약정이자에 대한 약정지연배상금률이 존재하며, 그 구체적인 지연배상금률은 연 5.45%(이 사건 1번 대출약정), 연 7.34%(이 사건 2번 대출약정), 연 7.85%(이 사건 3번 대출약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1번 대출약정 기발생 약정이자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20.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222,292원(= 50,418,985원 × 연 5.45% × 296일/366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2번 대출약정 기발생 약정이자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20.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3,989,735원(= 67,210,542원 × 연 7.34% × 296일/366일), 이 사건 3번 대출약정 기발생 약정이자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20.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209,350원(= 34,800,408원 × 연 7.85% × 296일/366일)이 된다.

2)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출약정 기발생 약정이자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20.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8,421,377원(= 2,222,292원 + 3,989,735원 + 2,209,35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범위에 포함된다.

라. 안분배당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경매절차에서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는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하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이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원고를 포함한 31명의 동순위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안분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 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는 15,225,456,210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미변제 대출원금 14,030,000,000원 + 미변제 대출원금에 대한 2019. 10. 22.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444,111,683원 + 미변제 대출원금에 대한 2019. 10. 23.부터 배당기일인 2020.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 742,923,150원 + 기발생 약정이자에 대한 2019. 10. 23.부터 배당기일인 2020.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 8,421,377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1,326,226원을 15,225,456,210원으로(차액: 1,015,870,016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546,575원을 1,071,416,591원(= 55,546,575원 + 1,015,870,016원)으로 각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유현중

판사김무신

판사심연수

별지

대출약정 체결일은 2016. 1. 8., 이 사건 3번 대출약정 체결일은 2018. 11. 26.이다.

5) 위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H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I회장, J협회장, K협회장, L협회장, M협회장, N단체장, O단체장, P단체장, Q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6)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한 이자율이다.

7) 계산상 290,023,387원이나,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89,835,479원으로 인정한다.

8) 4,750,000,000원(= 2,400,000,000원 + 2,240,000,000원 + 110,000,000원)

9) 계산상 281,968,306원이나,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81,785,616원으로 인정한다.

10) 계산상 171,413,114원이나,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71,302,055원으로 인정한다.